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34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 : 임이자 · 지성호 · 박성민

박대수 • 이 용 • 태영호

김형동 • 이종성 • 서일준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일부를 지킨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련 사업자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 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 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하 자
-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을 거부한 자
-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24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관련 사업자가 회수등의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③ (생 략)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서 신설> 지켜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 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 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안 전관리기준 일부를 지킨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 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 <후단 삭제> 다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

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1.·2. (생략) <신설>

<u>⑦</u> ~ <u>⑨</u> (생 략)

<신 설>

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 1. · 2. (현행과 같음)
- ⑦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24조의2(관련 사업자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등의 조 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

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계획이 어 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 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 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외 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 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관련 사업자가 제2항 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

제24조의2 (생략)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 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등의 명 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경우
- <u>제24조의3</u>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 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 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1. (현행과 같음)
-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 품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보고

	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
	의 보완요청을 거부한 자
<u><신 설></u>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6. 제24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
	런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
	국의 다른 관련 사업자가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
	<u>지 아니한 자</u>
<u>2</u> . (생 략)	<u>7</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